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35
----------	-------

발의연월일 : 2026. 3. 4.

발 의 자 : 서영교 · 박희승 · 임오경
박지혜 · 이해식 · 장경태
박균택 · 정준호 · 김원이
양부남 · 윤준병 · 이성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교원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자녀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교사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제7호).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7호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 ----- -----
7의2. ~ 13. (생략)	7의2.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